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재나5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자 2024재나50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재가소11 판결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재가소11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나39643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항소 취지 및 재심 청구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446,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10,748원을 소장 부분 청구일로부터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1. 3.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2021가소5752,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후인 2022. 5. 3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6,510,748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심의 소(2022재가소11)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6. 29. 선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2. 7. 11.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2. 8. 19.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는 이유로 각하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가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이 법원 2022나37371)에서 2023. 7. 2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23다263490)은 2023. 11. 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이 법원 2022나39643)에서 2024. 4. 9.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되었고, 상고심(2024다234307)은 2024. 6.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24. 6. 18.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왜곡되고 위조된 증거에 의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재심사유로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 즉 재심대상판결과 관련된 증거들에 관한 위조 내지 변조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정본을 2024. 4. 15. 송달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 1) 원고가 제출한 재심소장의 문구 그대로 기재한다.
- 2) 원고가 2024. 11. 4. 제출한 서면(2쪽)의 기재에 따른다.